

인천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591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탈퇴)

A 유한회사

원고승계참가인 L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지원, 담당변호사 김성후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4. 1.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단23292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7. 4.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7. 접수 제120237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 주식회사는 C에게 2012. 2. 10. 30,900,000원을, 2012. 6. 27. 17,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2) 원고는 2016. 5. 4. D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D 주식회사와 함께 2016. 5. 25. C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26147호로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30. ‘C은 원고에게 52,000,511원과 그 중 31,080,60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10. 7. C에게 송달되어 2016. 10.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1) C과 E, F, G은 남매 관계로, 2012. 9. 4.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G의 아들이다.

2) C과 E, F, G은 2017. 4.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60,000,000원(그 중 9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에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각 17,5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7. 접수 제120237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의 1/4 지분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1)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 : $8,125,000\text{원} = (\text{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 160,000,000\text{원} - \text{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I의 피담보채권 } 90,000,000\text{원} - \text{근저당권자인 J의 채권최고액 } 37,500,000\text{원}) \times 1/4$

② 충남 서산시 K 중 991.74/16434.3 지분 : $10,909,140\text{원} (= \text{위 토지의 } \text{㎡당 공시지가 } 11,000\text{원} \times \text{전체 면적 } 16434.3\text{㎡} \times 991.74/16434.3)$

③ 합계 : 19,044,140원

2) 소극재산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 : $54,312,397\text{원} (= 52,000,511\text{원} + 31,080,605\text{원에 대한 } 2016. 10. 8.\text{부터 } 2017. 4. 6.\text{까지의 지연손해금 } 2,311,886\text{원})$

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양수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12. 1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C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그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21. 1. 5. 내용증명 우편으로 C에게 원고가 위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이는 그 무렵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이 2012. 2. 10.과 2012. 6. 27.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2016. 5. 4. 양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7. 4. 6. 이전에 이미 발생된 것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서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약 6개월 전 원고가 청구한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신혼집 마련과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C의 재산상태나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과 피고가 친척 관계에 있는 점, ② C 등과 피고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 부동산 인도일 등 주요 부분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2017. 4. 6.)로부터

1년 4개월 전인 2016. 1. 6.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인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26147호 지급명령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던 C에게 송달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이후에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7. 4. 6.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소병진, 판사 원용일, 판사 이효인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1층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7.9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부구 대11625㎡

대지권의 종류: 1.소유권

대지권의 비율:11625 분의 25.31